

光州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

1995年 9月
總務社會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5年 9月 12日
- 나. 提出者 : 光州廣域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5年 9月 20日
- 라. 上程日字 : 1995年 9月 25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5年 9月 25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企劃監查室長 李 龍 玉)

가. 提案 事由

-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정책보좌관 운용을 위해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구분청 정원의 총수를 “322명”에서 “324명”으로 조정함
- 증원된 2명의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,
 - 보건 4급 1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
 - 시설 4급 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 부임
- 다만, 명예퇴직·공로연수요원 발령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는 퇴직일 또는 발령일까지로 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李海萬)

-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장의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서에 의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것으로
- 증원된 정원(2명)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게 되며
- 다만,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발령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
- 한시적 정원의 변동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게 되는 번거로운 일면이 있으나 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것으로 심사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 의견이었음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 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 음

8. 其他 事項 : 없 음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'322명'을 '324명'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한시정원) 증원된 2명은 한시정원으로 하되, 1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발령일까지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구본청·의회사무과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구 본 청 : <u>322명</u></p> <p>2. - 4.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구 본 청 : <u>324명</u></p> <p>2. - 4. (현행과 같음)</p>